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4. 2. 2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2월 8일

나. 발 의 자: 이예찬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2. 2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예찬 의원)

가. 제안이유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고용촉진, 여가 문화생활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및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계획 수립(안 제4조 ~ 제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6조 ~ 제7조)
- 사무의 위탁 및 준용(안 제8조 ~ 제9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 본 개정조례안은

-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고용촉진, 여가 문화생활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제5호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 노인·기타 저소득 노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으로 개정함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 및 부식구입비” 및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준용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음.

#### ○ 검토 결과

-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6%를 넘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며, 우리 구의 노인인구 비율 또한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노인복지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구청장 등의 책무 신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확대 등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제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br>번 호 | 306 |
|------------|-----|

발의연월일: 2024. 2. .

발 의 자: 이예찬, 유승용, 이성수  
남완현 의원(4인)

##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의 건강증진, 고용촉진, 여가 문화생활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계획 수립(안 제4조 ~ 제5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6조 ~ 제7조)
- 라. 사무의 위탁 및 준용(안 제8조 ~ 제9조)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2. 16. ~ 2. 20.)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생활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의 날 등”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수축하수당”이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9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

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문화·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2.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등
3.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시설 등
4. 「주민등록법」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7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2.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구입비
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설날·추석·노인의 날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지원금
6. 장수축하수당
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